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사업자 대상의 시공능력평가에서 실적평가액 대비 경영평가액의 상하한을 조정하여 경영평가 비중을 줄이고 신인도평가에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 관련 항목이 포함되도록 하여, 시공능력평가에 건설사업자의 실적, 기술능력 및 품질·안전관리 등 실제 시공능력의 반영도를 개선하고, 불법행위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실적평가액 대비 경영평가액의 상하한을 ± 3 배에서 ± 2.5 배로 조정하도록 규정 개정

나. 실적평가액 대비 신인도평가액의 상하한을 $\pm 30\%$ 에서 $\pm 50\%$ 로 조정하도록 규정 개정

다. 신인도평가액의 기존 안전·품질·해외건설 등 관련 가감점 수준을 조정하고, 시공평가 등 안전·품질 관련 신규 가감점 항목을 추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9. 8. ~ 10.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표 1 제1호나목(4) 중 “±3배(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를 “±2.5배(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로, “±3배(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를 “±2.5배(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21)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30/100”을 “±50/100”으로 하며, 같은 목 (1) 전단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건설공사와 관련된 신기술로 한정한다)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사업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건설공사와 관련된 신기술로 한정한다)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사업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제2항제5호”를 “제2항 제3호

및 제5호, 제6호”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같은 목 (4)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5)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호”로, “평균재해율(이하 “평균재해율”이라 한다)의 1배 이상 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를 “평균 사망사고 만인율(이하 “평균 사망사고 만인율”이라 한다)의 1배 이상 1.5배 이내의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평균 사망사고 만인율의 1.5배 초과 2배 이내의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 사망사고 만인율의 2배를 초과하여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같은 목 (6) 중 “부도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

당하는 금액”을 “부도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 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별점을 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다음 감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서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구분	부실별점 점수	감산비율
종합 건설 업체	1점이상 2점미만	1/100
	2점이상 5점미만	3/100
	5점이상 10점미만	5/100
	10점이상 15점미만	7/100
	15점이상	9/100

별표 1 제1호라목(8)(가)1) 중 “고용인원수가 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에”를 “고용인원수가 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로 하고, 같은 (가) 2) 중 “고용인원수가 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5에”를 “고용인원수가 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로 하며, 같은 (가) 3) 중 “고용인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를 “고용인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로 하고, 같은 목 (11) 중 “법 제86조의4”를 “평가연도 직전 연도에 제34조 제1항(법 제32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81조 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법 제86조의4”로 하며, 같은 목 (1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로 하고, 같은 목 (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고용평가단위	고용평가등급	가산비율
종합 건설 업체	종합건설업체 전체	1등급	6/100
		2등급	5/100
		3등급	4/100

별표 1 제1호라목에 (16)부터 (2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6)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법 제81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 시정명령 횟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 (17) 평가년도 직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 건설사업자의 평균적인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제4항에 따른 시공평가의 결과가 60점 초과 80점 이하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40점 초과 60점 이하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40점 이하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8) 평가년도 직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 건설사업자의 평균적인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4항에 따른 안전관리수준평가의 결과가 95점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고, 40점 초과 60점 이하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40점 이하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9)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사업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대재해를 유발하여 동법 제6조 및 제7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20)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제4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57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65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21)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사업자가 법 제38조의4 제3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 포상 횟수를 곱한

금액을 더한다.

별표 2 제1호라목(1)부터 (17)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가중평균액의 $\pm 30/100$ ”을 “가중평균액의 $\pm 50/100$ ”으로 하고, 같은 목 (1) 전단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건설공사와 관련된 신기술로 한정한다)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사업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건설공사와 관련된 신기술로 한정한다)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사업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제2항제5호”를 “제2항 제3호 및 제5호, 제6호”로,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를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에”로 하고, 같은 목 (4)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6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호”로, “평균재해율(이하 “평균재해율”이라 한다)의 1배 이상 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를 “평균 사망사고 만인율(이하

“평균 사망사고 만인율”이라 한다)의 1배 이상 1.5배 이내의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평균 사망사고 만인율의 1.5배 초과 2배 이내의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 사망사고 만인율의 2배를 초과하여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같은 목 (5) 중 “부도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도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7)(가)1) 중 “고용인원수가 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인원수가 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가) 2) 중 “고용인원수가 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인원수가 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

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같은 (가) 3) 중 “고용인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인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목 (9) 중 “법 제86조의4”를 “평가년도 직전 연도 중에 법 제34조 제1항(법 제32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81조 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법 제86조의4”로 하며, 같은 목 (11)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목 (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고용평가단위	고용평가등급	가산비율
전문 건설 업체	전문건설업체 전체	1등급	6/100
		2등급	5/100
		3등급	4/100

별표 2 제1호라목에 (14)부터 (1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4)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법 제81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 시정명령 횟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 (15)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사업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대재해를 유발하여 동법 제6조 및 제7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 (16)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제4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57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65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 (17)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사업자가 법 제38조의4 제3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 포상 횟수를 곱한 금액을 더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3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2. 제2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어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3. 제23조 제6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제1호 나목 (4)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u>±3배(산업 · 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u>,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u>±3배(산업 · 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u> [별표1] 제2호 라목 라. 위의 산식 중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요소별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u>±30/100[(9)에 해당하는 경우</u>	[별표1] 제1호 나목 (4)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u>±2.5배(산업 · 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u>,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u>±2.5배(산업 · 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u> [별표1] 제2호 라목 라. 위의 산식 중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요소별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u>±50/100[(9)에 해당하는</u>

에는 -6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건설공사와 관련된 신기술로 한정한다)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사업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이 경우 동일 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한다.

- (2) 생략

- (3)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법 제8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법 제82조의2 및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경우에는 -6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건설공사와 관련된 신기술로 한정한다)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사업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이 경우 동일 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한다.

- (2) 현행과 동일

- (3)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법 제8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3호 및 제5호, 제6호, 법 제82조의2 및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을 말한다)인 월수에 곱한 금액을 뺀다.

- (4)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인 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뺄 수 있다.

-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 시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년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을 말한다)인 월수에 곱한 금액을 뺀다.

- (4)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다음 감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서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구분	부실벌점 점수	감산비율
종합 건설 업체	1점이상 2점미만	1/100
	2점이상 5점미만	3/100
	5점이상 10점미만	5/100
	10점이상 15점미만	7/100
	15점이상	9/100

-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 시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건설사업자의 평균재해율(이하 “평균재해율”이라 한다)의 1배 이상 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 (6)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

직전년도 중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건설사업자의 평균 사망사고 만인율(이하 “평균 사망사고 만인율”이라 한다)의 1배 이상 1.5배 이내의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평균 사망사고 만인율의 1.5배 초과 2배 이내의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며, 평균 사망사고 만인율의 2배를 초과하여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 (6)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8)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국내인력을 해외 건설업에 고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금액을 더할 수 있다.

(가) 고용인원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더하되,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금액의 2배를 더한다.

1) 고용인원수가 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고용인원수가 50명 이상 50

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8)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국내인력을 해외 건설업에 고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금액을 더할 수 있다.

(가) 고용인원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더하되,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금액의 2배를 더한다.

1) 고용인원수가 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고용인원수가 50명 이상 50

<u>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5에</u> 해당하는 금액 3) <u>고용인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u> 해당하는 금액 (나) ~ (다) 생략 (9) ~ (10) 생략 (11) <u>법 제86조의4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u> 따라 전년도에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또는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건설사업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u>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u> 해당하는 금액 3) <u>고용인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u> 해당하는 금액 (나) ~ (다) 현행과 동일 (9) ~ (10) 현행과 동일 (11) <u>평가연도 직전 연도 중에 법 제34조 제1항(법 제32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81조 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u>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u>법 제86조의4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u> 따
--	---

	라 전년도에 상습채불건설사업자 또는 채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건설사업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2) 생략	(12) 현행과 동일
(13) 평가년도의 직전 연도 중에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u>	(13) 평가년도의 직전 연도 중에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u>
(14)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다음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금	(14)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다음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액을 더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구분	고용평가 단위	고용평가 등급	가산비율
종합	종합	1등급	5/100
건설	건설업체	2등급	4/100
업체	전체	3등급	3/100

(15) 생략

< 신 규 >

금액을 더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구분	고용평가 단위	고용평가 등급	가산비율
종합	종합	1등급	6/100
건설	건설업체	2등급	5/100
업체	전체	3등급	4/100

(15) 현행과 동일

(16) 평가연도 직전년도 중에 법 제81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 시정명령 횟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17) 평가년도 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간 건설사업자의 평균적인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제4항에 따른 시공평가의 결과가 60점 초과 80점 이하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40점 초과 60점 이하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

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40점 이하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8) 평가년도 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간 건설사업자의 평균적인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제14항에 따른 안전관리수준평가의 결과가 95점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고, 40점 초과 60점 이하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40점 이하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9)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사업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대 재해를 유발하여 동법 제6조 및 제7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20)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제4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57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65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21)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사업자가 법 제38조의4 제3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 포상 횟수를 곱한 금액

[별표2] 제1호 라목

라. 위의 산식 중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다. 다만, 요소별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pm 30/100$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건설공사와 관련된 신기술로 한정한다)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사업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이 경우 동일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한다.

- (2) 생략

을 더한다.

[별표2] 제1호 라목

라. 위의 산식 중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다. 다만, 요소별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pm 50/100$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건설공사와 관련된 신기술로 한정한다)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사업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이 경우 동일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한다.

- (2) 현행과 동일

(3)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법 제 8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법 제82조의2 및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을 말한다)인 월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 시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평균재해율의 1배 이상 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

(3)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법 제 8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3호 및 제5호, 제6호, 법 제82조의2 및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을 말한다)인 월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 시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평균 사망사고 만인율의 1배 이상 1.5배 이내의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

고,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5)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7)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국내인력을 해외건설업에 고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금액을 더할 수 있다.

(가) 고용인원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더하되, 「중소기업

하는 금액을 빼고, 평균 사망사고 만인율의 1.5배 초과 2배 이내의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며, 평균 사망사고 만인율의 2배를 초과하여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5)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7)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국내인력을 해외건설업에 고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금액을 더할 수 있다.

(가) 고용인원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더하되,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금액의 2배를 더한다. 1) <u>고용인원수가 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u> 2) <u>고용인원수가 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u> 3) <u>고용인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u> (나) ~ (다) 생략 (8) 생략 (9) <u>법 제86조의4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또는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u>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금액의 2배를 더한다. 1) <u>고용인원수가 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u> 2) <u>고용인원수가 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u> 3) <u>고용인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u> (나) ~ (다) 현행과 동일 (8) 현행과 동일 (9) <u>평가연도 직전 연도 중에 법 제34조 제1항(법 제32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항을 위반하여</u>
--	--

된 건설사업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30에 해당
하는 금액을 뺀다.

(10) 생 략

(11)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2항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
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
액을 뺀다.

(12)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
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

법 제81조 제4호에 따라 시정
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법
제86조의4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또는 체
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건
설사업자는 최근 3년간 건설
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
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0) 현행과 동일

(11)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
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
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을 뺀다.

(12)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
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

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다음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구분	고용평가 단위	고용평가 등급	가산비율
<u>전문</u>	<u>전문</u>	<u>1등급</u>	<u>5/100</u>
<u>건설</u>	<u>건설업체</u>	<u>2등급</u>	<u>4/100</u>
<u>업체</u>	<u>전체</u>	<u>3등급</u>	<u>3/100</u>

(13) (생략)

<신규>

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다음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구분	고용평가 단위	고용평가 등급	가산비율
<u>전문</u>	<u>전문</u>	<u>1등급</u>	<u>6/100</u>
<u>건설</u>	<u>건설업체</u>	<u>2등급</u>	<u>5/100</u>
<u>업체</u>	<u>전체</u>	<u>3등급</u>	<u>4/100</u>

(13) 현행과 동일

(14) 평가연도 직전년도 중에 법 제81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 시정명령 횟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15) 평가연도 직전년도에 건설사업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대재해를 유발하여 동법 제6조 및 제7조, 제10조, 제11조에 따

라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최
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
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6)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소음
진동관리법」 제23조 제4항
을 위반하여 동법 제57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폐
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
을 위반하여 동법 제65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
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다.

(17)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사
업자가 법 제38조의4 제3항
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 최근 3년간 건설
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
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u>금액에 해당 포상 횟수를 곱</u> <u>한 금액을 더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512